

■ 법률 칼럼

# 종교이민의 대안으로서의 취업2순위

최근 종교이민 수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를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바꾸는 절차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전통적인 선택은 종교비자(R-1)를 신청하여 2년 이상 시무를 하고 종교이민(EB4)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동안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은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에서 사전에 알아야 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L/C) 절차가 필요 없기에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교이민 청원서 처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최근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를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즉 일반 취업이민에서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 취직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나 종교기관에 취직하는 형태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개 종교비자 신청자인 목사님들은 신학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순위 취업이민이 종교이민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추가로 L/C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종교이민 신청과 처리 기간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반 취업이민의 경우

종교이민과 달리 종교비자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시무한 기록이 없어도 바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이민청원서는 동시에 두 개 이상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이민청원서(I-360)가 접수되어 있는 동안에도 문제 없이 일반취업이민(EB2) 절차를 중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 실사나 오랜 대기 기간에 대한 부담없이 짧은 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2순위 취업이민은 종교이민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스폰서 교회를 일반 고용주로 심사하기 때문에 재정 능력을 검증할 IRS에 제출된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증명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조건도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상태가 좋은 경우에만 취업 2순위로 진행을 하도록 권고드립니다. 그러므로 발급 말씀드린 주의 사항과 장단점들을 잘 고려하여 취업이민을 종교이민 대안으로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근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던 종교이민 청원서 처리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단축되고 있어서 그 점도 잘 고려를 하여 취업2순위를 종교이민의 대안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권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 미국식 장례

오십 년 전 팔순을 눈앞에 둔 할아버지는 갖을 쓰고 한복 정장과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대담배를 피우시며 큰아들 이민 길에 함께 오셨다. 환송을 나온 온 일가 친척들은 살아계신 할아버지를 장례치렀다고 했었다. 그 할아버지는 미국생활 8년 동안 감기 한 번 앓지 않으시고 여러 자녀들 집으로 다니시다가 생의 마지막 두 주 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맞는 사별이기에 아버지와 숙부들도 미국인 장의사가 인도하는 대로 미국식으로 장례를 진행하였다.

장례를 인도하다 보면 가정의 이민 역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민 온 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충격 속에 장례를 치르고 엄마는 고생하시며 우리들을 정말 힘들게 키우셨다. 이제 엄마를 아버지 곁으로 보내드리다면서 중년이 된 자식들은 미국식으로 장례를 치렀다. 오늘도 날아오는 부고를 받고 환송예식에 가면 망자는 관속에 정장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누워계신다. 조객들은 고인의 모습을 보고 유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나오는 미국식 장례에 참석하게 된다.

오십 년 전이나 이십 년 전이나 지금도 미국인 장의사가 인도하든지 면허를 가진 한인 장의사가 인도를 하든지 돌아가신 망자를 방부처리하여 예쁘게 화장을 하고 관을 열어 조객들이 보게 하는 방법은 지극히 미국식이다. 이 미국식 장례는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유래를 알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미국도 오래전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집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귀향하였다. 한 가정에 죽음이 임하면 마을 교회에서 종을 치고 동네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교회로 모여 잠시 장례식을 하고 가까이 있는 땅에 묻었다. 그리고 모두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고 한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묘지를 선정하였고 시신을 운반하는 마차와 영구차가 필요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 남북전쟁 시절 북군이 남부전선에서 전사하면 병사들은 적지에서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전사한 자식을 확인하고 집 가까이 묻기 원하였다. 귀향하는 동안 시신이 상하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염이 시작되었다. 관을 열어 망자를 보는 풍습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장례로 더욱 일반화 되었다. 그 당시 미국의 영웅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현직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워싱턴 DC에서 장례를 시작하여 가족이 있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안장되기까지 180도시와 7주를 기차로 다니며 가는 곳마다 장례식을 하였다. 관을 열고 국민들은 링컨 대통령을 보고 애도하였다. 장례식을 할 때마다 방부 처리를 조금씩 더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링컨 대통령은 미라처럼 되어 백여 년이 지난 최근 묘지를 보수할 때 보니 그대로였다고 한다.

성경 창세기에 아담이 죽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 방부처리(Embalming)를 40일 동안 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모세오경을 성서로 믿는 유대인들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성경말씀을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미국에 왔으나 미국식 장례를 답습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시신 방부처리 하지 않고 가능한 빨리 매장한다. 못 하나 사용하지 않는 나무관을 사용하며 관을 열지 않는다. 바닥이 없는 겹관을 사용한다. 이 모두 미국에서 어떻게 죽어야 하나 고민한 결과 얻은 그들의 지혜이다.

우리도 이민 역사를 더해 가지만 아직 우리 동포사회에서 죽음과 장례에 준비와 지식이 없으니 이민 초창기와 차이가 없다.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우리는 이전 한국에서처럼 매장은 할 수 없을까?

이호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